



경찰학

25년 2차시험 대비
최신 개정법령 정리

개정법령

특강



25년 하반기 시험대비 경찰학 개정법령 특강

한국경찰학원 경찰학 김민현



경찰인권보호규칙

<p>제13조 (간사)</p>	<p>① 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 통지,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경찰청 : 인권보호담당관</p> <p>2. 시·도경찰청 : 인권업무 담당 계장</p> </div>
<p>제18조의3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운영)</p>	<p>① 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제18조의2에 따른 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2.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개발과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경찰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p> </div> <p>③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협의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민간 전문가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경찰청 각 국·관 서무업무 담당 계장</p> <p>2. 각 시·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p> <p>3.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관련 부서 과장과 민간 전문가</p> </div> <p>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p> <p>⑥ 인권보호담당관은 협의회 회의 결과를 경찰청 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24조의2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 운영)</p>	<p>①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력 후보군 중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경찰관등</p> <p>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집회·시위자문위원(전직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3.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p> </div> <p>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점검단으로 활동한 사람(소속 경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p>

공무원 결격사유

<p>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p>	<p>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p> <p>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p> <p>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p> <p>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p> </div>
<p>국가공무원법 제33조</p>	<p>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p> </div>

경찰공무원임용령

<p>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p>	<p>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써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div> <p>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	--

<p>제20조 (시보임용 경찰공무원)</p>	<p>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p>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p> <p>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p> <p>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div>
<p>제20조의2 (임용심사 위원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p> <p>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p> <p>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p> </div> <p>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p>	<p>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p>제15조 (중앙승진심사위 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p>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7. 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대학에서 **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인사, 노무 또는 경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7. 7.>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7. 7.>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 7. 7.>

⑨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 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div> <p>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신·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div> <p>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1. 5.></p>
<p>제40조의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p>	<p>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돈 관련)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div> <p>②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p> <p>③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 7.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p>제41조 (특별승진심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② 경찰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전사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7. 7.>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7. 7.> ④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10., 2025. 7. 7.>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5. 7. 7.>
<p>제26조 (근속승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100분의 40 x)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7.>

경찰공무원법

<p>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379 1848 1425 2000">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p> <p>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p> <p>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p> <p>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p>
<p>제27조 (당연퇴직)</p>	<p>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제29조 (공상경찰 공무원 등의 휴직기간)</p>	<p>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p>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p>	<p>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p> <p>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p> <p>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p>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2018. 10. 16.>
-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3. 4. 11., 2024. 12. 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경찰공무원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제10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위법한 x)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손실보상 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x)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30일 x)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산입한다 x).**
-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기각 x)**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p>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⑦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1.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6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 부터 10일(30일 x) 이내에 통지</p> <p>2.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x) 통지</p> <p>⑧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구두 x),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구두 x)으로 통지한다.</p> <p>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p> <p>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p> <p>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p> <p>⑨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10일 x)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손실보상 결정권자의 결정으로 x)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지급한다 x).</p> <p>⑩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⑪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p> <p>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경찰서 x)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설치할 수 있다 x).</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5명 이상 7명 이내 x)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소속경찰관)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구성하여야 한다 x).</p> <p>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p>

	<p>1. 소속 경찰관</p> <p>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3년 x) 이상 근무한 사람</p>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조교수 x) 이상으로 5년(3년 x) 이상 재직 한 사람</p> <p>4.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3년 x)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경찰청장 x)가 지명한다.</p>				
<p>제12조 (보상위원장)</p>	<p>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위원중에서 호선 x)이 된다.</p> <p>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p> <p>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제외 x)한다.</p> <p>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p>	<p>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 (위원의 해촉)</p>	<p>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심신쇠약(심신장애 x)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p>				
<p>제17조의2 (보상금의 환수절차)</p>	<p>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59 1601 1428 1657"> <tr> <td>1. 환수사유</td> <td>2. 환수금액</td> <td>3. 납부기한</td> <td>4. 납부기관</td> </tr> </table> <p>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30일 x)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p>제17조의3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p>	<p>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분기별 x)로 국가경찰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x)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② 국가경찰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x)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규칙·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제11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경찰청장 은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경찰대학장 2. 경찰인재개발원장 3. 중앙경찰학교장 4. 경찰수사연수원장 5. 경찰병원장 6. 시·도경찰청장 7. 경찰서장 8. 직할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인가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 (특별 인가)	①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경찰공무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거나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경비, 경호, 작전, 항공 및 정보통신 담당 부서(다만, 직할대(기동대, x) 의 경우에는 행정부서에 한한다)
제54조 (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나. 발간실 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라. 시·도경찰청 항공대 마.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 부서 전역 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법과학분석계(시·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과학수사대)

	2. 통제구역 가. 암호 취급소 나. 정보 보안기록실 다. 무기 창·무기고 및 탄약고 라. 종합 상황실·치안상황실 마. 암호장비관리실 바. 비밀 발간실 사. 종합조회처리실 아. 통합증거물 보관실 자. 사건 기록관·사건기록보관실
--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경찰청훈령)

정의 (제3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및 시·도경찰청을 말한다. 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에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직무대리자의 순위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제4조)	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및 국장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제5조)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단장 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시·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단장·과장 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단장·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를 한다. ④ 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부·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경찰서장의 직무대리 (제7조)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 이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 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안정책교육 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직할대장의 직무대리 (제8조)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직무대리의 지정 (제9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p>직무대리의 특례 (제10조)</p>	<p>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직무대리의 운영 (제11조)</p>	<p>①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p>	
<p>직무대리권의 범위 (제12조)</p>	<p>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p>	

경비업법

<p>제2조 (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div>
------------------------	---

경비업법시행령

<p>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p>	<p>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행사장등”이라 한다)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p>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제11조의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p>	<p>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p>	<p>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p> <p>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p> </div>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p> <p>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p> <p>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div> <p>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p> <p>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p>

<p>제26조의2 (영상녹화물 의 증거능력 특례)</p>	<p>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div> </div> <p>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p>	<p>① 피해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p>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p>제22조의2 (보호유치실의 수용)</p>	<p>① 유치인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유치인에 대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일지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재한 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시간 이상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괴롭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유치인보호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 등을 계속하여 다른 유치인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는 때 4.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p> </div>
<p>제35조의3 (접견 녹음 대상)</p>	<p>①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 내용을 녹음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인이 구류·감치 등의 사유로 입감되어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다.</p> <p>③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그 대화를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p>

<p>제35조의4 (접견 녹음 안내 및 고지)</p>	<p>경찰서장은 녹음장치가 설치된 접견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유치인과 접견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 한다.</p>
<p>제35조의5 (녹음시스템 등 관리)</p>	<p>① 경찰서장은 접견 녹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접견 녹음시스템의 장비 및 접견실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p>
<p>제36조 (접견의 장소 등)</p>	<p>① 접견은 접견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 장소에 입회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접견장소에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p>	<p>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p>
<p>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p>	<p>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p>	<p>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p>
<p>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p>	<p>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수사 특례)</p>	<p>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u>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p> </div> </div> <p>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p>	<p>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p> <p>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p> <p>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p>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p>	<p>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p>
<p>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p>	<p>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제22조의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 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p>	<p>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div>
<p>제22조의7 (국가경찰위 원회와 국회의 통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p>제22조의8 (비밀주수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22조의9 (준수사항)</p>	<p>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p>
<p>제22조의10 (면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제22조의11 (수사 지원 및 교육)</p>	<p><u>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u> 사법경찰관리에게 <u>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u>,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u>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u>(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u>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관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u>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u>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u> 이 경우 <u>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

경찰재난관리규칙

제2조 (재난 상황 시 국·관의 임무)	경비국장(치안상황관리관 x) 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조 (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경비국장(치안상황관리관 x)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 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td> </tr> </table>	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도경찰청등 재난상황실 설치 및 운영)	시·도경찰청등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td> </tr> </table>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경찰청장 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경비국장(치안상황관리관 x)이 재난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각 국·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재난대책본부의 격상)	① 제12조에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지휘소(현장지휘본부 x) 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u>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u>을 말한다.</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div> <p>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p>
<p>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p>	<p>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div> <p>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 (교통안전 교육)</p>	<p>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p>	<p>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음주운전 등)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p> <p>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p> </div>
<p>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p>	<p>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p> <p>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p> <p>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p> </div>
<p>제148조의3 (벌칙)</p>	<p>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52조 (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p> </div>
<p>제160조 (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p> </div>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방해행위

<p>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p>	<p>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p> <p>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p> </div> <p>5. 제6호 나목 또는 다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p> <p>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p> <p>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p> </div>
<p>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p>	<p>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다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 후단(음주측정)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p> <p>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p> </div> <p>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p>

여권법

<p>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p>	<p>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과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과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p> <p>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p>
---	---

출입국관리법

<p>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63조)</p>	<p>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p> <p>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p> <p>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p> <p>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p> <p>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p> <p>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p> </div> </div> <p>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p>
--	--

<p>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p>	<p>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p> <p>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p>	<p>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도주한 경우</p> <p>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div> <p>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p>제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p>	<p>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p> <p>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p> <p>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p> </div>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p> <p>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p> <p>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p>
<p>제6조의2 (특별검거 보상금)</p>	<p>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의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를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p>
<p>제7조 (보상금의 지급 제한)</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p> <p>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p> <p>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p> <p>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p> </div>

	<p>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p>
<p>제9조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p>	<p>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p>